

● 제28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746, 747, 748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9. 05. 31.

다. 회 부 일 : 2019. 06. 03.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3,513,868백만원

○ 징수결정액 : 3,512,675백만원

○ 실제수납액 : 3,504,677백만원

○ 불납결손액 : 5백만원

○ 미 수 납 액 : 7,993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임 (전년도 99.9%)

<2018회계연도복지본부소관세입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 률 (B/A)
합계	3,513,868	3,512,675	3,504,677	5	7,993	99.8
일반회계	2,327,542	2,323,745	2,315,747	5	7,993	99.7
200 세외수입	50,645	57,421	49,423	5	7,993	86.1
210 경상적세외수입	13,505	13,681	13,372	0	309	97.7
211 재산임대수입	423	244	238	0	6	97.7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23	244	238	0	6	97.7
212 사용료수입	585	480	480	0	0	100.0
212-08 기타사용료	585	480	480	0	0	100.0
213 수수료수입	31	33	33	0	0	100.0
213-01 증지수입	31	33	33	0	0	100.0
214 사업수입	12,340	12,166	11,876	0	289	97.6
214-02 주차요금수입	74	73	73	0	0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266	12,092	11,803	0	289	97.6
216 이자수입	126	758	744	0	14	98.2
216-06 기타이자수입	126	758	744	0	14	98.2
220 임시적세외수입	37,140	43,740	36,051	5	7,685	82.4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0	101	1	0	100	1.0
223-03 변상금	0	101	1	0	100	1.0
224 기타수입	34,450	37,236	32,989	0	4,247	88.6
224-01 불용품매각대	12	4	4	0	0	100.0
224-04 시·도·군·구 반환금수입	29,149	27,515	25,292	0	2,223	91.9
224-06 그외수입	5,288	9,718	7,693	0	2,025	79.2
225 지난연도수입	2,690	6,402	3,061	5	3,337	47.8
225-01 지난연도수입	2,690	6,402	3,061	5	3,337	47.8
30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0	0	100.0
31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0	0	100.0
311 지방교부세	170	170	170	0	0	100.0
311-02 특별교부세	170	170	170	0	0	100.0
500 보조금	2,264,136	2,257,660	2,257,660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2,264,136	2,257,660	2,257,660	0	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 률 (B/A)
	511 국고보조금등	2,264,136	2,257,660	2,257,660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2,249,645	2,243,169	2,243,169	0	0	100.0
	511-02 국고보조금특별회계보조금	9,425	9,425	9,425	0	0	100.0
	511-03 기금	5,066	5,066	5,066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1	8,494	8,494	0	0	100.0
	710 보전수입등	19,082	10,721	10,721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2,356	8,417	8,417	0	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356	8,417	8,417	0	0	100.0
	713 용자금원금수입	236	77	77	0	0	100.0
	713-01 민간투자금회수수입	236	77	77	0	0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6,326	1,188,930	1,188,930	0	0	100.0
200	세외수입	526	3,130	3,130	0	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526	3,130	3,130	0	0	1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8	449	449	0	0	100.0
	223-01 과징금	38	449	449	0	0	100.0
	224 기타수입	489	2,681	2,681	0	0	100.0
	224-06 그외수입	489	2,681	2,681	0	0	100.0
500	보조금	634,153	634,153	634,153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634,153	634,153	634,153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634,153	634,153	634,153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634,153	634,153	634,153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1,647	551,647	551,647	0	0	100.0
	710 보전수입등	7,494	7,494	7,494	0	0	100.0
	711 잉여금	7,494	7,494	7,494	0	0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7,494	7,494	7,494	0	0	100.0
	720 내부거래	544,153	544,153	544,153	0	0	100.0
	721 전입금	544,153	544,153	544,153	0	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44,153	544,153	544,153	0	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5,828,287백만원
- 예산증감 : 15,562백만원
- 예산현액 : 5,843,849백만원
- 지출액 : 5,777,822백만원
- 이월액 : 22,606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8,114백만원
- 불용액 : 35,30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6% 발생(전년도 1.3%)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35,306	16,734	0	2,305	16,268	0

<2018회계연도복지본부세출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복지본부 합계	5,843,849	5,777,822	22,606	8,114	35,306	0.6%
일반회계	4,644,992	4,579,516	22,606	8,114	34,755	0.7%
복지정책과	200,092	194,457	161	116	5,357	2.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97,701	192,186	161	116	5,237	2.6%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50,550	46,571	0	71	3,908	7.7%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19,823	118,338	161	45	1,279	1.1%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7,327	27,277	0	0	50	0.2%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복지정책과)	328	227	0	0	101	30.7%
기본경비	328	227	0	0	101	30.7%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일반예산(재무활동)		2,063	2,044	0	0	19	0.9%
보전지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63	2,044	0	0	19	0.9%
희망복지지원과		1,422,041	1,419,814	67	909	1,251	0.1%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38	38	0	0	0	0.0%
기본경비		38	38	0	0	0	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877,067	874,839	67	909	1,251	0.1%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714,159	713,015	0	909	235	0.0%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40,006	39,638	0	0	368	0.9%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860	2,740	67	0	53	1.8%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20,042	119,446	0	0	596	0.5%
일반예산(재무활동)		544,936	544,936	0	0	0	0.0%
내부거래지출(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544,153	544,153	0	0	0	0.0%
보전지출		783	783	0	0	0	0.0%
어르신복지과		1,868,464	1,849,218	7,495	4,010	7,740	0.4%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864,753	1,845,600	7,495	4,010	7,647	0.4%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10,845	193,349	7,495	4,009	5,991	2.8%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1,574,724	1,574,689	0	0	35	0.0%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4,226	43,261	0	1	964	2.2%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4,957	34,300	0	0	657	1.9%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6	36	0	0	0	0.0%
기본경비		36	36	0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3,675	3,582	0	0	93	2.5%
보전지출(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675	3,582	0	0	93	2.5%
인생이모작지원과		248,017	235,044	6,678	1,672	4,623	1.9%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42,274	229,302	6,678	1,672	4,623	1.9%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54,378	147,679	3,526	1,672	1,500	1.0%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87,897	81,623	3,151	0	3,123	3.6%
재무활동(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5,715	5,715	0	0	0	0.0%
보전지출		5,715	5,715	0	0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7	27	0	0	0	0.0%
기본경비		27	27	0	0	0	0.0%
장애인복지정책과		211,626	205,805	1,611	416	3,794	1.8%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09,379	208,826	1,611	416	3,526	1.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49,024	145,581	72	394	2,977	2.0%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53,098	52,659	0	0	439	0.8%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511	1,455	0	0	56	3.7%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746	4,132	1,539	22	54	0.9%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9	39	0	0	0	0.0%
기본경비		39	39	0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2,208	1,940	0	0	268	12.1%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208	1,940	0	0	268	12.1%
장애인자립지원과		561,070	550,316	4,618	250	5,887	1.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B-C-D)	불용률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559,288	548,619	4,618	250	5,802	1.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525,476	519,859	366	249	5,002	1.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6,297	11,314	4,251	0	732	4.5%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7,514	17,446	0	0	68	0.4%
재무활동(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750	1,666	0	0	85	4.8%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750	1,666	0	0	85	4.8%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2	32	0	0	0	0.0%
기본경비	32	32	0	0	0	0.0%
자활지원과	133,683	124,862	1,976	742	6,103	4.6%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6,651	52,143	1,976	0	2,532	4.5%
노숙인 자활지원	32,906	29,206	1,976	0	1,725	5.2%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3,744	22,937	0	0	807	3.4%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73,064	68,751	0	742	3,571	4.9%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73,064	68,751	0	742	3,571	4.9%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9	29	0	0	1	1.8%
기본경비	29	29	0	0	1	1.8%
일반예산(재무활동)	3,940	3,940	0	0	0	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자활지원과)	3,940	3,940	0	0	0	0.0%
도시개발특별회계	12,530	12,074	0	0	456	3.6%
어르신복지과	12,530	12,074	0	0	456	3.6%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2,530	12,074	0	0	456	3.6%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도시개발특별회계)	12,530	12,074	0	0	456	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6,326	1,186,232	0	0	94	0.0%
희망복지지원과	1,186,326	1,186,232	0	0	94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58	54	0	0	4	6.9%
인력운영비	58	54	0	0	4	6.9%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1,186,268	1,186,178	0	0	90	0.0%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186,268	1,186,178	0	0	90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7건, 2,037백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24건, 14,952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총 2건, 4,913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32건, 22,606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 ③
합계	2,901,299	2,894,823	2,881,802	4,857	8,164
당해(소계)	2,899,031	2,892,555	2,880,217	4,213	8,126
일반회계	2,264,136	2,257,660	2,245,369	4,213	8,07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4,153	634,153	634,106	0	4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742	742	742	0	0
이월(소계)	2,268	2,268	1,585	644	38
명시(일반회계)	679	679	30	644	4
사고(일반회계)	1,589	1,589	1,555	0	34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323,335	3,443	11,788	8,345	326,77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997	△561	296	857	13,43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4,588	1,094	3,288	2,194	25,68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524	377	1,370	993	7,90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7,226	2,533	6,834	4,301	279,759

4. 채권현재액 : 30,677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말 복지본부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864,138.50㎡ 1,019,194백만원
 - 건물 253,298.57㎡ 346,204백만원
 - 기타 24건 2,510백만원,
- 총1,367,908백만원상당의금액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1,200,803	174,701	7,596	1,367,908
행정 재산	합계	1,183,441	174,701	1,358,142
	공용재산	466,671	166,511	633,182
	공공용재산	710,641	8,035	718,676
	기업용재산	6,129	155	6,284
	보존재산	-	-	-
일반재산	17,362	-	7,596	9,766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 말 복지본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36개, 현재액 89백만원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4	3	-	3	-	1	1	36
	금액	88,092	4,628	-	4,628	-	3,513	3,513	89,207
일반회계	수량	34	3	-	3	-	1	1	36
	금액	88,092	4,628	-	4,628	-	3,513	3,513	89,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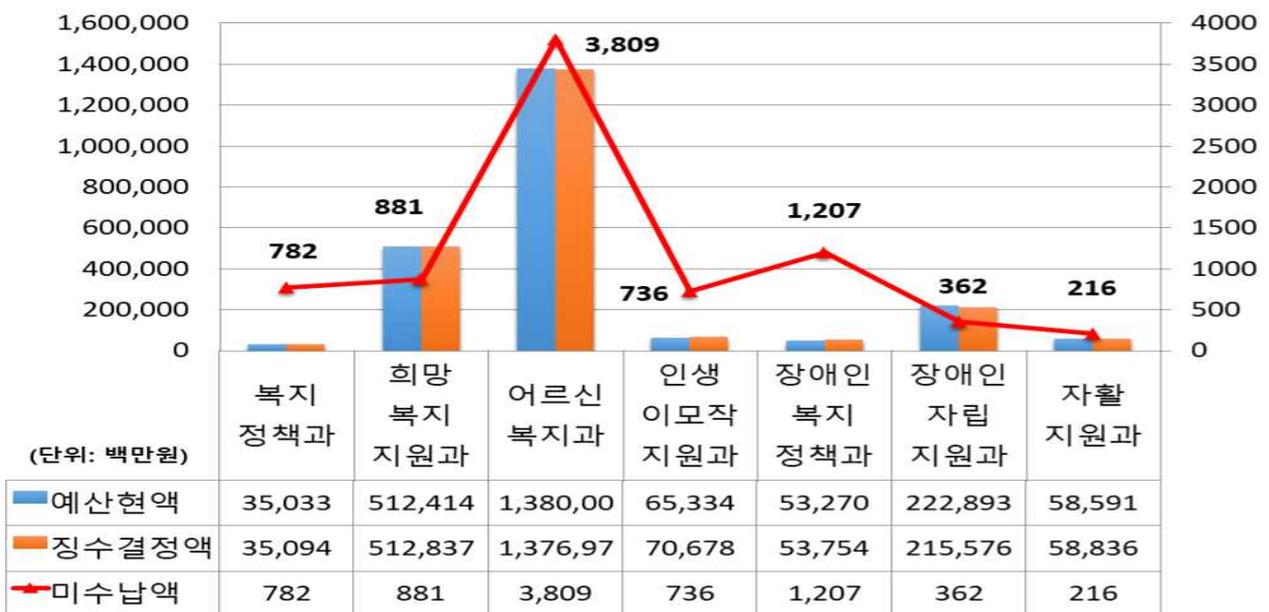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3,157억 4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조 3,237억 4천 5백만원 대비 99.7%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5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9억 9천 3백만원임.
- 국고보조사업 감액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2조 3,275억 4천 2백만원 대비 37억 9천 7백만원 과소 징수되었는 바,
- 미수납액 79억 9천 3백만원 발생 사유는 자치구 예산 미편성에 따른 시·도비반 환금수입 및 승화원 관리비 체납 등 사유로 발생함.

복지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 세입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국고보조금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부과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등으로 구분되어, 반환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가정산 결과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정산 완료 후 실제 반납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지만 향후 보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1-1〉 복지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2,327,542	2,327,542	2,323,745	2,315,747	5	7,993	99.7	2,764,136
복지정책과	35,033	35,033	35,094	34,312	0	782	97.8	509,553
희망복지지원과	512,414	512,414	512,837	511,956	0	881	99.8	27,209
어르신복지과	1,380,007	1,380,007	1,376,970	1,373,157	5	3,809	99.7	1,733,927
인생이모작지원과	65,334	65,334	70,678	69,942	0	736	99.0	75,349
장애인복지정책과	53,270	53,270	53,754	52,546	0	1,207	97.8	57,006
장애인자립지원과	222,893	222,893	215,576	215,214	0	362	99.8	253,956
자활지원과	58,591	58,591	58,836	58,620	0	216	99.6	107,136

나. 지원규모 등 사전 협의를 통한 과학적 세입예산 운용 필요

- 복지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1-2〉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과부족액 (c-a) (차액비율)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423	244	238	△185 (△43.7%)	(어르신복지과)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평균으로 추계하여 편성. 정확한 추계 어려움<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 협의 등 운영지연('18.11월부 운영)사유 발생으로 인해 임대 수입금 감소>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1.1. 사용기간 전에 한국전력이 2019년 대부료 7백만원을 납부하여 2년치 수납(2018.12. 납부, 세입 예산액 7백만원)
	기타이자 수입	126	758	744	618 (492.8%)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평균으로 추계하여 편성. 정확한 추계 어려움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	12	4	4	△8 (△67.7%)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평균으로 추계하여 편성. 정확한 추계 어려움
	그외수입	5,288	9,718	7,693	2,405 (45.5%)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평균으로 추계하여 편성. 정확한 추계 어려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56	8,417	8,417	△3,939 (△31.9%)	중앙정부 '17년 말 감액내시에 따라 세입예산편성일시 대비 '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6	77	77	△159 (△67.3%)	당초 예상보다 대출상환금 감소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 매년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없이 개략적 예산 편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 결산 시마다 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치구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에 대한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사

전에 거쳐서 예산편성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구를 통한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발생한 경우라면 복지전달체계상의 행정상 하자 또는 원활하지 못한 사업 집행상 문제에 기인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시민에 대한 적시의 공공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사후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반납사유 등에 대한 과학적인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치구가 사업지원의 목적대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구 노력이 필요함.

〈표 1-3〉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과부족액 (c-a) (차액비율)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38	449	449	411 (1093.0%)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 발생
	그외수입	489	2,681	2,681	2,192 (448.5%)	자치구 반납 잉여금 추가 발생

다.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수립 요망

-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매칭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고, 중앙정부의 가내시가 변경될 경우에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서상의 간주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항목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 변경할 경우, 매칭비율에 의한 서울시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비 매칭 사업의 성격상 국비가 감액되면 서울시비분을 감액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기회비용 상실 및 사장(死藏)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예산변경에 따라 사업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기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재원 부족에 기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국비매칭에 의한 서울시비분 감액으로 수립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면 다른 대상자를 위해 활용될 수 있었던 재원이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기회비용의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복지정책실의 수혜대상자가 대부분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혜대상자 입장을 고려한 치밀하고 적정한 예산 운용이 요망된다고 할 것인 바, 복지재원의 기회비용 상실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집행부는 복지재원인 예산의 사장(死藏)을 막고, 사업수혜대상자인 시민이 가진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를 위해 정부 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정부 간 사무분장 재조정 및 재원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 1-4> 국고보조금 과소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총사업비 (예산액)(A)	보조금수령 (확보)액(B)	차액 (C=A-B)	비율(%) (C/A)
총계			248,177,181	241,695,583	6,481,598	2.6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732,453	19,360,967	371,486	1.9
어르신복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금	89,600	89,400	200	0.2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 업보조(이전 재원)	3,456,385	2,997,026	459,359	13.3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 업비	462,802	262,411	200,391	43.3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 본보조	2,269,257	1,649,200	620,057	27.3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단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7,374	67,000	50,374	42.9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회관계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5,000	300,000	35,000	10.4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263,791	839,530	424,261	33.6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 업보조	1,299,361	1,257,739	41,622	3.2
인생이모작 지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743,335	51,609,622	133,713	0.3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2,902	312,621	281	0.1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복지사 업보조	977,000	934,318	42,682	4.4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1,000	125,504	25,496	16.9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 업보조(이전 재원)	771,086	764,646	6,440	0.8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 업보조	38,582,540	38,581,551	989	0.0
장애인자립 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9,979,000	68,201,000	1,778,000	2.5
	장애수당-기초	사회보장적 수혜금	9,303,828	9,288,828	15,000	0.2

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총사업비 (예산액)(A)	보조금수령 (확보)액(B)	차액 (C=A-B)	비율(%) (C/A)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149,580	34,177,709	971,871	2.8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67,000	254,000	13,000	4.9
	희망키움통장 I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86,171	1,950,027	36,144	1.8
	내일키움통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61,272	457,797	3,475	0.8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23,878	991,306	432,572	30.4
	희망키움통장II	사회 복지사 업보조	4,762,770	4,141,459	621,311	13.0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장	민간 자본사 업보조(이전 재원)	8,175	-	8,175	100.0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장	민간 위탁사 업비	223,900	220,000	3,900	1.7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300,000	278,190	21,810	7.3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747,721	2,583,732	163,989	6.0

라. 세외수입 누락된 수납예산에 대한 세입 추계 철저

- 복지본부는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변상금 세외수입(101백만원) 징수결정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1억 1백만원을 징수 조치하였음.
- 집행부는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으로 세입처리한 사유를 변상금의 이중부과로 인해 징수결정 등록(18년 3월)시 감액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 세입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는 세입액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하여 세출예산을 통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표 1-5>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으로 세입처리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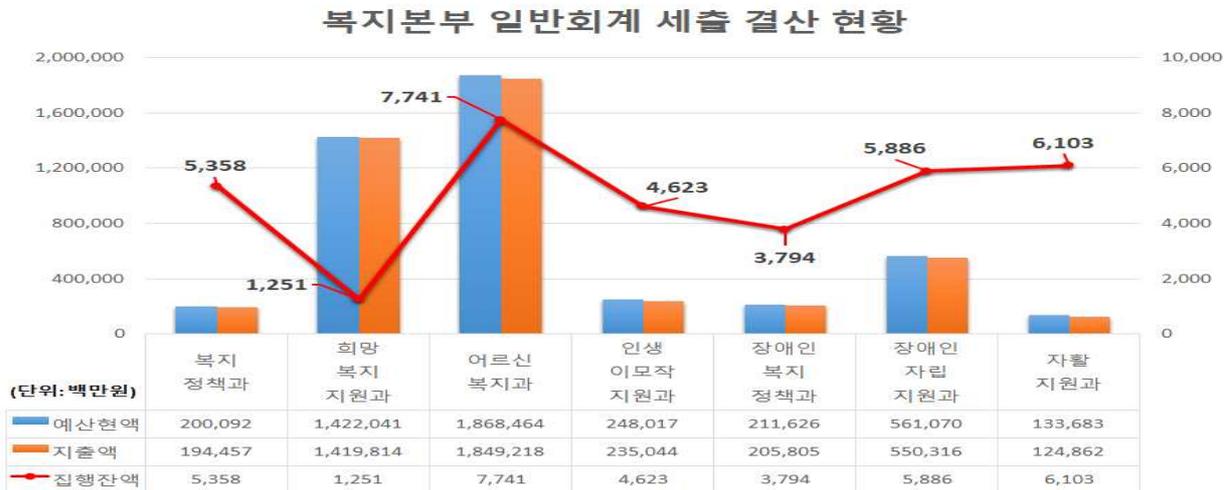
(단위: 천원)

예 과	산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 액	바수납액	세입예산편성없이 징수결정 사유
세외 수입	변상금	-	101,350	1,052	100,298	변상금 이중부과로 '18년 3월 징수결정 등록시 감액 처리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4조 6,450억원이고, 이 중 4조 5,780억원을 집행한 바, 집행잔액 348억원(불용률 1.40%)으로 나타났음.



〈표 2-1〉 복지본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4,629,431	4,644,992	4,579,516	22,606	8,114	34,755	98.6	5,332,387
복지정책과	199,647	200,092	194,457	161	116	5,358	97.2	1,513,540
희망복지지원과	1,420,599	1,422,041	1,419,814	67	909	1,251	99.8	241,187
어르신복지과	1,860,145	1,868,464	1,849,218	7,495	4,010	7,741	99.0	2,261,107
인생이모작지원과	247,932	248,017	235,044	6,678	1,672	4,623	94.8	262,693
장애인복지정책과	209,194	211,626	205,805	1,611	416	3,794	97.2	233,263
장애일자립지원과	558,290	561,070	550,316	4,618	250	5,886	98.1	625,229
자활지원과	133,625	133,683	124,862	1,976	742	6,103	93.4	195,368

○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989억원이고, 이 중 1조 1,983억원을 집행한 바, 집행잔액 6억원(불용률 0%)로 나타났음.

나. '18회년도 예산의 전용, 변경 및 이체 사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을 보면,
 - 복지본부의 2018회계연도의 예산전용은 7건(20억 3천 7백만원), 예산변경은 23건(134억 5백만원)으로 나타남.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번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의 전용 건수와 금액(7건, 20억 3천 7백만원)은 전년도 전용 건수 12건(18억 2천 3백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표 2-2> 2018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 계 별	건 수	승인금액	비 고
	합 계	31건	16,989	
이 용	소 계	-	-	
	일 반 회 계	-	-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	-	
전 용	소 계	7건	2,037	
	일 반 회 계	7건	2,037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	-	
이 체	소 계	-	-	
	일 반 회 계	-	-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	-	
변 경	소 계	24건	14,952	
	일 반 회 계	23건	13,4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	1,547	

- 예산이체는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으로 금번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의 예산변경사용 건수는 24건으로 금액은 1,149억 5천 2백만원인 바, 전년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배 이상 상승하였음.

<표 2-3> 2018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세부내역

구 분	건수	금 액	사 유
일 반 회 계 변 경 사 용	23	13,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분 확보 (119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분담금 확보 (8백만원) · 사회서비스원 연구용역비 확보 (50백만원) ·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 (4백만원) ·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확보 (2,371백만원) ·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재산장제급여 부족분 확보 (76백만원) · 정부양곡 할인 지원금 부족분 확보 (7백만원) ·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 (218백만원) · 시립 및 민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어컨) 확보 (238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의 만성적인 인력난 심화에 따라 보람일자리 참여자 활동기간 연장 (2,000백만원) ·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세부사업 분리 (3,620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이상 사업 자치구 발주를 위해 시설비로 변경 (2,810백만원)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스프링클러) 자치구 발주를 위해 시설비로 변경 (1,015백만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분담금 확보 (281백만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호봉 증가 등에 따른 부족분 확보 (30백만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예산 확보 (136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호봉증가 등에 따른 부족분 확보 (140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편성액과 확정내시액 차이 발생에 따른 불용액을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재원으로 활용 (5백만원) ·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 (117백만원)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임차계약 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부족분 확보 (100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58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경사용	1	1,547	·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등 요양비 증가에 따른 자치구 보조금 추가 확보 (1,547백만원)

다. 예산변경제도를 이용한 행정편의 중심적 활동 지양

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서울시 보훈대상 및 단체의 예우와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편성된 바,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살펴보면 ① 보훈대상자 위문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③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으로 18회계년도 예산액 324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1천 9백만원 (감)변경하고, 36억 9천 6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불용률 11%)

○ 집행부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 증가로 연말(12월) 지출 예정액이 부족 등의 사유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감변경하여 집행하였음.(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0억원 편성되어 1억1천9백원 (증)변경되었음.)

○ ‘보훈대상과 단체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수혜대상의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바,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부족분’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보훈대상 단체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은 그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교부 변경내시(11월)에 따라 (부족한) 시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11억 7천 1백만원 중 8백만원을 (감)변경조치한 바 있음.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바, 같은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 편성된 예산을 (사업의 성격상 차이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으로 변경 사용하는 행태는 사실상 변경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예산집행의 성격상 문제가 있어 보임.

○ 집행부는 2014회계연도부터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매년 연례적으로 (감)변경하여 다른 사업의 필요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예산집행을 방만히 운영하는 행정편의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표 2-4〉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변경 집행

(단위: 천원)

회계연도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후 예산집행 상황 (금액,%)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018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2,451,350	119,000		1,119,000 (100%)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000		119,000		
2017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2,889,500	200,000		1,066,676 (91.2%)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70,000		200,000		
2016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1,633	160		1,114,096 (99.5%)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의료기관 이용횟수 증가로 의료비 지원 사업비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		160		
2016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1,473	60		114,096 (99.5%)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 연로하여 의료기관 이용횟수 증가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60		60		

○ 의회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집행부의 예산변경을 막기 위하여 집행부가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을 집행부의 행정편의에 따라 부족 예산의 충당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편성·집행한 집행부의 운영행태는 의회의 예산 회계 통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것인바, 앞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결산 내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사회서비스원 혁신추진반 운영

-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구성된 바, 공청회와 간담회 및 공단설립 타당성 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 2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 5천만원은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예산편성 시 이를 사무관리비으로 편성한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예산변경하여 운용하였음(5월).
-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구성된 한시적 특별조직인 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기초적인 조직 설계와 개략적이며 전체적인 운영 방향 및 (사전적인) 대시민 홍보 등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개발비가 가진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임하는 태도가 안일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앞으로 통계목의 잘못된 편성 등 단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 보장계획 심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바,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과시행 계획 등을 연구·조정하며,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있음.
- 2018년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초 예산액은 3억 6천 8백만원이었으나, 사무관리비 예산을 (감)변경하여 특정경비활동비로 전용조치(4백 1십만원)함.
- 그러나 특정경비활동비는 사실상 대민활동을 하는 복지정책실 내 직원에 대한 수당적 성격으로 운용되어 왔음. 사무관리비는 민간인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나, 대민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할 수 없는 바, 사무관리비를 (감)편성하여 특정경비 활동비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원 수당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인 회의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가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특정경비활동비로 전용조치하여 집행한 것은 집행부가 예산집행권을 남용하는 등 편법적이며 편의적 집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표 2-5〉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변경사용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구분
정책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269,280	4,100	4,100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85,280		4,100	181,180	-
		특정업무경비	84,000	4,100		88,100	-

라. 예산 사업 시행을 위한 편의적·임의적 예산 전용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수급자의 출산과 사망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8회계연도 예산은 6,797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예산액 308억원 중 6억 8천 6백만원을 (감)변경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통계목 예산액에 증액 편성함.

〈표 2-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후 예산 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018회계연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0,800,480	686,308		30,114,172 (100%)	기초생활 일반수급 자 생계급여 부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48,902,248		686,308	652,123,648 (100%)	
2017회계연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32,605,588	1,000,000		31,605,588 (100%)	시설수급자 생계 급여 집행 잔액을 예산변경 사용하여 국비 변경(증액) 내시에 따른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시비 추가 부담액 확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631,953,502		1,000,000	632,953,502 (100%)	

○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감액 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변경 금액 및 집행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회계적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89억 2백만원에서 6억8천6백만원 (증)변경할 경우 6,495억 8천 9백만원이어야 하나, 회계상 6,521억 2천 4백만원으로 오류를 보이고 있음.

- 회계상 오류가 발생했다면 집행액 및 불용액 발생에 대한 별도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집행부의 예산회계에 관한 관리상 치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예산변경에 대해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별 수요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추계의 누락 또는 계상 착오로 보여짐.
 - 같은 예산에 대해 예산변경이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변경제도를 활용하여 편의적인 예산 운용 대상으로 활용하고 행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사료됨.
- 생계급여가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사용을 위해 사전적 조치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반드시 필요해 보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기능으로 분리되어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매년 추가경정예산 (증)편성안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뒤에, 집행부의 편의적이고 관례적인 예산사용변경을 통해 변경한 행태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산 집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탈적인 집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을 사유로 면책되기 힘들다고 보이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예산변경권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지방의회가 가지는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집행부가 각인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해야 하며 의결된 예산안을 준수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불용액 관리 필요

-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노후장비보강 교체 등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자치단체자본보조 30억 8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3천 8백만원을 (감)변경하여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1억 2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7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율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통계목에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중 국비 반납액이 26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으로 나타남.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국가의 치매책임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의 치매전담시설 확충 계획¹⁾에 따라 서울시는 치매전담시설 예산을 예산에 편성함.
 - 치매전담사업에 대한 신청시설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사업의 시행은 국비 반납액 및 사고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시민의 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의 사장 등 시급한 사업을 집행뿐 아니라 사업의 계획조

1) 지역본부별 치매전담형 기관 지정 현황

2019.1.31.현재(단위: 개소, %)

지역본부	대상기관(계)	치매전담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합계	비율	기관수	치매전담기관	기관수	치매전담기관	기관수	치매전담기관
총계	8,593	77	0.9	3,395	45	1,926	3	3,272	29
서울	1,333	14	1.1	391	8	427	0	515	6
부산	781	9	1.2	308	5	81	1	392	3
대구	1,147	7	0.6	363	5	267	0	517	2
광주	1,232	11	0.9	506	6	182	2	544	3
대전	1,192	17	1.4	466	11	252	0	474	6
경인	2,908	19	0.7	1,361	10	717	0	830	9

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하여 발생시키는 부정적 요소라고 판단되며,

- 정부의 일방적 사업 집행 행태에 대한 메가시티인 서울의 포용적 복지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 차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2-7〉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집행율
정책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8,865,561	238,269	238,269	8,865,561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 계 개선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3,008,418		238,269	2,770,149	100.0
		민간자본사업보조	4,595,139	165,052		4,760,191	15.8
		민간위탁사업비	1,262,004	73,217		1,335,221	95.3

- 아울러 집행부는 2004년부터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계가 아닌 약식 도면으로 심사하는 등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누락하거나 등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사업 선정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어르신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수요가 많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인해 긴급기능보강비(포괄예산)에 대한 각 시설의 지원요청이 빈발하고 있는 바, 기능보강사업비를 홍보성 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불용시키지 않고,

긴급기능보강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 매칭 예산 협조 등을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복지본부 신규사업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한 불용을 발생

- 복지본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액은 128억 2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1억 7천 9백만원) 대비 90.5% 집행하였음.
- 신규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과 예산 교부로 인해 불용액 6억 4천 3백만원이 발생함.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중앙부처의 상명하달식의 목표치 설정에 대해 집행부가 소극적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시행범위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선행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2018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설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나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표 2-8〉 2018회계년도 신규사업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사업·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복 지 본 부	14,171	14,179	12,828	57	0	1,294	90.5	6,2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696	704	704	0	0	0	100	1,130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복지정책과)	390	390	280	57	0	53	71.8	320
자녀양육 고민을 나누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시민참여) (복지정책과)	6	6	6	0	0	0	100	0
아동 텃밭조정 사업(시민참여) (복지정책과)	4	4	4	0	0	0	100	0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복지정책과)	80	80	80	0	0	0	100	0
서울복지박람회 개최 (복지정책과)	200	200	190	0	0	10	95.0	0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새로운 도약(시민참여) (희망복지지원과)	30	30	0	0	0	30	0.0	0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힐링 쉼 콘서트(시민참여) (희망복지지원과)	23	23	23	0	0	0	100	0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지원(시민참여) (어르신복지과)	50	50	50	0	0	0	100	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어르신복지과)	179	179	178	0	0	1	99.4	185
저소득 독거어르신 빨래방 운영(시민참여) (어르신복지과)	10	10	10	0	0	0	100	0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시민참여) (어르신복지과)	250	250	216	0	0	34	86.4	0
고양시 대로3-33호선 도로확장 분담금 (어르신복지과)	2,300	2,300	2,300	0	0	0	100%	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인생이모작지원과)	1,324	1,324	1,324	0	0	0	100%	1,155
50+지역 커뮤니티 활동(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200	200	200	0	0	0	100%	0
실버트레인 추억여행(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25	25	25	0	0	0	100%	0
개방형 경로당 조성(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50	50	50	0	0	0	100%	0
어르신일자리 창출(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35	35	35	0	0	0	100%	0

구 분 (실·국·사업·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인생이모작지원과)	4,241	4,241	4,241	0	0	0	100%	0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1,250	1,250	735	0	0	515	58.8%	985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12	12	12	0	0	0	100%	0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20	20	20	0	0	0	100%	0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102	102	102	0	0	0	100%	0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61	61	61	0	0	0	100%	0
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사업(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36	36	36	0	0	0	100%	0
찾아가는 효자손 사업(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10	10	10	0	0	0	100%	0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점자스티커 제작 배부 (장애인자립지원과)	85	85	78	0	0	7	91.8%	0
장애인이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기구들이 필요해요 (시민참여) (장애인자립지원과)	120	120	120	0	0	0	100%	0
소리 친구 저의 눈빛을 알아맞혀주세요 (시민참여) (장애인자립지원과)	15	15	15	0	0	0	100%	0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시민참여) (자활지원과)	260	260	259	0	0	1	99.6%	0
인문학에서 길을 찾다(시민참여) (자활지원과)	10	10	10	0	0	0	100%	0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지원과)	2,097	2,097	1,454	0	0	643	69.3%	2,455

- 2018년도 신규사업의 다음 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1건(57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월 발생사유는 2019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용역업체 선정의 유찰로 인한 지연으로 재공고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정이 지연되었음('18년 12월 선정함).

〈표 2-9〉 신규사업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이월률 (C/A)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90	280	57	0	0	14.6%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운영	390	280	57	0	0	14.6%

바. 간주처리규정으로 인한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 간주규정에 따른 경우 국·시비 매칭 비율에 의거하여 부족시비분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른 세부사업(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등)에서 일부 감액하여 확보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을 통해 신설된 세부사업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간주처리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간의 물리적 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 마련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입법 취지를 비추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의 예산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시급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함.
- 간주처리규정을 확대해석할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사유로 하여 집행부가 예산사업을 과다하게 신설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복지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자가 대다수이고 이는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회는 승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이는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

- 중앙정부와 단독으로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방비 부담 사업을 무분별하게 간주처리규정으로 예산에 편입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표 2-10〉 간주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간주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88,804	0	7,650	7,650	704,104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166,654	300,000	1,963,561	0	22,430,215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41,999,248	0	6,903,000	3,221,400	652,123,648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46,200	0	120	0	546,320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산장제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49,720	0	162,880	76,009	3,588,609
희망복지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635,000	4,406,717	4,105,703	7,308	21,154,728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100,000	237,000	2,766,000	1,383,000	21,486,000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03-01 자치단체차본보조	0	0	33,000	0	33,000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50,678,577	0	18,053,790	3,529,960	1,572,262,327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19,500	△621,324	505,102	0	11,303,278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970,324	0	170,000	0	12,140,32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586,905	2,794,655	189,050	0	223,570,61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013,160	0	117,000	117,000	11,247,160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간주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3,000	0	305,000	0	1,638,000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12,144	448,440	115,500	57,750	6,933,834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7-05 민간위탁금	1,078,213,538	128,038	90,000,000	△1,546,568	1,166,795,008

2018회계연도 예산총칙 간주처리 규정

제10조 2017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의결권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그 심의·의결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주처리규정’은 사실상 집행부의 임의적·자의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용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주처리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간주처리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사용’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이전에 탄력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조기집행 한시적 운영 - 행자부 공문(2.12일, 9.2일)

▶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가능 ('16.1.1 ~6.30일, '16. 9.2 ~12.31일)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사.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1)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연례적·반복적 예비비 지출

- 복지본부의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49억 1천 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의 주요 사유는 긴급복지, 기초연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됨.
- 국고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나 보건복지부 행복e음을 통해 수요과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유동적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국시비 매칭분에 따른 시비분 예산이 의회가 의결한 예산 내역과 다르게 변경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집행되는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 2-11〉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사 유
합 계		4,913	4,913		
회 망 복 지 지 원 과	긴급복지지 원사업	1,383	1,383	0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부족분 확보
어 르 신 복 지 과	기초연금 지급	3,530	3,530	0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부족분 확보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2) 기능보장 사업의 지연 및 매입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 발생

-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사고이월사업은 17개로 96억 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의 주요 발생 사유를 보면,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등 각종 기능보장 사업과 관련한 공기(工期) 부족에 따른 31억 5천 1백만원,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정 지연에 따른 23억 5천 6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장”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12억 8천 8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5개 사업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으며, 그 예산은 130억 2백만원으로 나타남. 명시이월이 발생한 주요 사유를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68억 9천 2백만원, “50+캠퍼스 확충” 사유지 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25억 7천 3백만원,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주민 지원시설 매입 잔금 19억 7천 6백만원 등으로 나타남.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둔 제도로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 연례반복적인 이월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판단됨.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에 맞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 예산 불용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예산편성시 반영 필요

1) 국고보조금 적극적 확보 노력 필요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은 시설 입소 노숙인들에 대하여 숙식제공, 상담·직업훈련 및 자활프로그램 등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 지원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은 시립 3개소, 법인운영 22개소임.
- 2018년도 예산은 총 114억 5천 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7천 7백만원으로 지출 후 집행 잔액은 2억 7천 7백만원 발생함

〈표 2-12〉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 2018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 천원, %)

통계목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계	11,947,098	-	11,454,000	11,178,000	277,000	2.3
사무관리비	15,000	-	15,000	9,611	5,390	35.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00	-	9,400	9,088	311	3.3
민간위탁금	3,899,649	-	3,785,587	3,612,800	172,787	4.6
사회복지사업보조	7,372,221	-	6,873,596	6,833,233	40,363	1.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자원)	289,328	-	289,328	258,942	30,386	10.5
민간대행사업비	361,500	-	481,500	454,135	27,365	7.6

- 동 사업은 시설장 중도퇴사 등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억원, 입소 정원 대비 실 급식인원 감소(305명)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 1억이 발생하였음. 노숙인 자활시설의 입소정원이 1,265명인데 반해 2018현 입소 현원은 951명으로 감소하였는 바, 감소의 원인이 서울시 노숙인원의 감소인지 또는 집행부의 적극적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원인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비로 편성된 사업복지사업보조의 경우 당초 예산액 73억 7,22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을 통해 4억 9,863만원을 감액한 바, 동 사업의 민간위탁금의 경우 당초 예산액 38억 9,965만원에서 1억 1,406만원(감)추경하였음. 기능보강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시점(당해년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감)추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사업 계획 및 선정 심의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최근 몇 년간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를 제외하고 감전용이 있어 왔는데, 감전용 예산을 불용액으로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마다 10억~13억('14년 9억7천, '15년 13억 4천, '16년 13억 2천, 17년 10억 9천) 정도의 불용(불용율 10% 내외)이 있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등 좀 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표 2-13〉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최종예산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2014	(x123,390) 11,865,449	△500,802	(x123,390) 11,364,647	(x118,380) 10,889,860	(x5,010) 474,787	4.1
2015	11,443,716	△267,937	11,175,779	10,103,440	1,072,339	9.6
2016	12,028,552	0	12,028,552	10,707,387	1,321,165	10.9
2017	11,692,467	△223,380	11,469,087	10,597,682	871,405	7.5

<최근 3년간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 인원 현황>

- ▷ 2016년 25개소 정원 1,377명/ 현원 1,045명('15년도 연평균 이용 인원)
- ▷ 2017년 25개소 정원 1,377명/ 현원 1,017명('16년도 연평균 이용 인원)
- ▷ 2018년 24개소 정원 1,355명/ 현원 965명('17년도 연평균 이용 인원)
- * 생활인 입소 추이 1,045명 → 1,017명(△28명) → 965명(△52명)

2)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한 치밀한 사업 관리 요망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8년말 기준 73개소(이용자 112명, 종사자 57명)가 운영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추진과 함께 중점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임.(22년까지 300명 탈시설 추진 예정,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 개요('18년말 기준)

- 주 택 : 총73개소 운영
 - 가형 35개소, 나형 12개소, 다형 24개소, 체험형 2개소
- 이용기간 : 2년 이내(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지역사회 체험 및 직업탐색 지원 등
- 이용기준 :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

〈표2-14〉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적('09~'18)

구 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사설수 (개소)	73	65	62	55	55	55	52	41	30	3
중수 (개소)	8	3	7	0	0	3	11	11	27	3

- 2018년 자립생활주택운영 예산을 전체 예산 35억 5천만원 예산 중 3천만원을 (감)변경 사용하였고, 6억 2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불용률 17.5%)
- 집행부는 불용사유에 대해 SH와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시기와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 시기가 서로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집행부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SH공사와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상반기에 입주물량을 확보하였으나, 탈시설 장애인의 입주 시점에 따라 공실(空室)로 운영될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상·하반기 입주 물량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이로 인해 집행부는 탈시설 장애인 수요에 따라 SH공사와 LH공사의 공공임대 주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운영비를 불용처리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집행부의 불용사유를 감안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입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空室) 운영을 염려하여, 상반기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 탈시설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상반기 SH공사와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적시에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2-15〉 장애인자립생활운영 예산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현 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3,551,346	-	△30,000	3,521,346	2,898,018	623,327 (17.5%)

- 결론적으로 사업추진 절차상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기나 탈시설 장애인의 퇴소 시기 등에 대한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정확한 공급, 수요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기나 탈시설 시점에 있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및 SH와 LH 공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한 공급과 예측 수요를 반영한 치밀한 사업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

- 집행부의 예산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민생과 관련 있는 중요 사업의 불용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불용액에 해당하는 재원을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死藏)한다는 점에서 불용예상액을 추경이나 예산변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임.
 - 또한 불용액이 빈발할 경우에는 다음해 예산편성 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미집행잔액은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건전하지 못한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경우 면밀한 사업시행의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2-16〉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1억원 발생현황·사유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합계	1,704,773,832	17,677,351	32,972,639	1.9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4,452,800		3,761,661	10.9	(불용사유)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수당예상 지급인원보다 실제지급 인원이 적어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보훈수당 대상자 변동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편성
2	의사상자 지원	157,000		127,000	80.9	(불용사유)보건복지부의 사상자 인정 결과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당초예상 인원 보다 적어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서 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적정 예산 편성
3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3,217,916	104,469	300,070	9.3	(불용사유)의원발의 사업이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편성액 대비 결정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4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89,098,774		311,316	0.3	(불용사유)사회복지관(98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잔액 (향후대책)사회복지관 98개소(지원 96,특별지원2)운영비 실집행 규모 반영 예산편성
5	사회복무 요원 중식비 등 지원	22,430,215		466,654	2.1	(불용사유)당초 예상 지급인원 보다 실제 지급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예산편성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편성
6	기본경비	328,251		100,857	30.7	(불용사유)국내여비 집행잔액(예산과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일괄 편성됨)
7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생 계급여	682,237,820		146,003	0.0	(불용사유)시설 수급자 수 감소('17년 대비1.5%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발생 (향후대책)저소득층 적극 발굴 및 집행 이행 철저
8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운영	16,463,200		357,596	2.2	(불용사유)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확대('18.10월)로 4분기 신규 선정인원 감소(-58%)로 불용 (향후대책)제도 개편 및 향후 소요액 산출시 오차범위 줄여서 집행 잔액 최소화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9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85,776,213		557,144	0.6	(불용사유)2018년 당초 정원기준(정원4,36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치구 사회복지인력의 결원(육아휴직등)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10	어르신생 활시설 운영	13,726,982	141,644	2,613,641	19.0	(불용사유)<양로시설>시설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변동(퇴직 및 신규전입)에 따라 집행액 발생 <요양시설> 노인성질환에 따른 등급판정 및 사망으로 인해 등급외자 지원 인원수 감소(140→62명) (향후대책)시설종사자 현황, 지원대상자 변동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11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566,511	172,420	2,355,227	20.4	(불용사유)<노후시설기능보강>시설사업 취소,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금액 조정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치매전담형시설전환>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전담형 시설전환사업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치매전담형 시설전환(증개축·개보수)사업제도 개선으로 집행률 제고
12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8,017,430	7,181,379	469,700	2.6	(불용사유)공사 미착공에 따른 감독여비 등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13	어르신돌 봄중사자 지원센터 운영	3,462,000		543,895	15.7	(불용사유)컴터 설치 시무보증금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로 예산 절감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14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7,790,040		676,352	3.8	(불용사유)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한 인증 심사 강화로 데이케어센터 인증 요건 충족한 시설(192개)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예산편성시 218개소 목표)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잔 액 최소화
15	시립장사 시설위탁 운영	25,090,799		656,949	2.6	(불용사유)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97.4%이며, '18.10월 계약심사과에 서 민간위탁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한 65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잔 액 최소화
16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12,530,438		456,489	3.6	(불용사유)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국 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잔 액 최소화
17	어르신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0,115,559		135,873	0.1	(불용사유)보건복지부 가내시 근거로 예산반영 하였으나, 확정내시에서 사 업량 축소(68943->67943)되어 불용 발생 *가내시('17.9월, 사업량 68,943개), 확정내시('18.1월, 사업량 67,943개) ○향후대책:정상추진
18	보람일자 리 사업	10,906,000		215,453	2.0	(불용사유)하반기 중도탈락자에 대한 활동비 집행잔액 (향후대책)하반기 중도탈락자 발생을 고려, 예산편성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19	50+센터 확충 및 운영	4,081,233		188,785	4.6	(불용사유)성북50+센터 건립추진 지 연으로 성북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일 부 불용(145백만원) 및 동대문구50+ 센터 건립 보류로 자치단체자본보조 금 일부 불용(40백만원) (향후대책)신규 건립 추진하는 경우 부지확보 여부, 실시설계완료 등 전 공정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확인 후 예산편성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20	50+캠퍼스 확충	7,254,443	3,526,359	651,421	9.0	(불용사유)동부캠퍼스 사전절차(행안부투자심사 등)이행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으로 미착공되어 공사비 등 미집행(향후대책)사업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21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3,620,000		212,324	5.9	(불용사유)시 직속 어르신일자리시범사업 공모(2회,5개기관6개사업)를 통해 사업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으나우수사업 공모 참여부진으로 불용 발생(향후대책)시범사업에 대해 공모전 자치구에 공모실시 계획을 안내하여 수행기관들이 공모기간 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홍보 철저 시행
22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2,140,324		354,029	2.9	(불용사유)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 조성사업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자치구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사업 신청금액과 예산불일치로 불용 발생(향후대책)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지원 산출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23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54,083	3,151,294	2,655,053	26.4	(불용사유)서울노인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15.6억원) 공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반영(6.5억원)하여 집행잔액(9억원), 소방설비(7.5억원) 및 환경개선(4억원)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자치구사업 포기 집행잔액 등(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
2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 운영	10,789,495		410,705	3.8	(불용사유)공동생활가정 4개소 폐지(임마누엘미성,구의작은예수의집,임마누엘신대방,늘좋은집) 및 종사자의 퇴사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향후대책)신속한 신규 지원사업(미지원시설)을 통한 보조금 집행을 제고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2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7,016,326		1,051,260	1.1	(불용사유)탈시설 정책추진으로 종사자, 이용인 감원과 종사자 퇴직시 채용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26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263,400		116,141	9.2	(불용사유)2018년 신규 보완 대체의 사소통(AAC)서비스 전담직원 채용(5개월,4명) 및 센터장 교체(1명,4개월)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발생(116백만원) (향후대책)직원 퇴직 후 채용공고 등인력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제고
27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운영	3,521,346		623,327	17.7	(불용사유)일부 자립생활 주택 하반기 확보로 인한 운영비 미지급 발생 (향후대책)자립생활 주택입주 수요자 연계 및 적정 추계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방지
28	중증장애 맞춤형지침출원	1,250,000		514,335	41.1	(불용사유)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방식 변경으로 시스템 구축비 미집행(100백만원),개인 예산제 시범운영사업에 대해 면밀한 추진을 위한 검토(학술용역등) 후 시행하고자 불용(350백만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 및 전수조사 용역 집행잔액(65백만원) (향후대책)예산편성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면밀한 검토, 사회보장제도 협의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4,277,268		439,347	1.3	(불용사유)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8개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종사자 퇴사시 채용 공백 등) (향후대책)시설별 채용공백 최소화하여 집행잔액 발생 예방
30	반환금및 기타	2,207,548		267,704	12.1	(불용사유)'17년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미반납액(128,180천원) 및 '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미반납액 발생(139,524천원) (향후대책)반환금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 반납 철저(보건복지부 반납고지서 조기 발급 의뢰 및 자치구 반납 예산확보 철저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31	장애아가 족 아동양육 지원	2,157,300		140,103	6.5	(불용사유)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7,197천원을 확정내시 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시비 매칭비율 보다 시비를 더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감추경을 미 실시하여 매칭분 2,017,197천원은 전액 집행분 외 시비 과다편성분에 대한 불용액 발생 (향후대책)향후 예산편성시 보건복지부 내시에 맞게 시비 편성
32	중증장애 인자립생 활지원센 터 운영	8,651,900		251,584	2.9	(불용사유)서초구 지역보조금 지원대상 센터 부재(165백만원) 및 예산절감 (향후대책)서초구 지역보조금 지원대상 센터 선정
33	장애인복 지관 운영	78,373,759	90,077	172,590	0.2	(불용사유)홀트강동복지관 개관 지연으로 운영비 불용액 발생(당초4월개관→6월), 시비 집행잔액 시 e호조 반납 (향후대책)불용액 최소화 하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
34	장애인수 화통역센 터 운영	7,288,328	41,445	108,597	1.5	(불용사유)인력채용 지연, 컴퓨터 조성 면적 감소, 통역사 채용 지연, 컴퓨터 조성 면적 감소로 공사비감소 (향후대책)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내역 현황 파악
35	시·청각 장애인학 습지원센 터 운영	6,622,793	234,650	175,662	2.7	(불용사유)신규사업으로, 관련 기관업 무협의(5.12.보건복지부), 당사자(사청각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개최(3~5월말)로 시일이 소요 되었으며, 5월말 선정된 자치구 중 공모 완료(7월)로 하반기부터 사업비 교부 되어 불용액 발생 (향후대책)선정 소요기간을 감안한 집행 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36	장애수당 -기초	29,712,576		481,032	1.6	(불용사유)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장애인자립기반과-7375,2018.11.2.) 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장애수당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와 적정 추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37	중증장애 인연금	119,232,900		3,093,778	2.6	(불용사유)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변경내시(장애인자립기반과-7362,2018.11.2.) 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중증장애인연금 홍보강화와 적정 추계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방지
38	장애인가 족지원센 터 운영	1,183,000		367,250	31.0	(불용사유)신규 추가하는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 6개가 하반기 개소됨에 따라 상반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개소시 소요되는 사전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불용율을 최소화 하는 예산수립 및 집행잔액 최소화
39	장애인복 지관 기능보강	3,143,657	102,614	586,187	18.6	(불용사유)(시설비)'18.5월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 설계비 및 용역비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 뇌성마비복지관 용역비 조정 : 90,000천원 → 36,246천원 - 상이군경복지관 설립 타당성 용역비 조정 : 50,000천원→ 33,456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립구립법인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지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향후대책)집행현황 분석 및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40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4,858,600	955,000	138,328	2.8	(불용사유)별관 부지매입 후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소유)의 소유권 일치를 위해 시구유지 교환 취득 절차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정지연되어 시설비 등의 예산을 이월하여 19년도에 사용 예정 (향후대책)공사일정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
41	노숙인 의료지원	6,864,905		1,240,318	18.1	(불용사유)서울역 무료진료소 매도에 따른 매입 불가 (향후대책)역전우체국으로 이전 추진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42	쪽방거주 자 생활안정 지원(쪽 방상당소 운영 지원)	7,102,506	1,976,000	286,129	4.0	(불용사유)시립쪽방상당소 사무실 임차 보증금 및 월세가 절감되어 2018년 관련 예산 499백만원 중 192백만원이 불용됨 (향후대책)2019년 시립쪽방상당소사 무실 임차비 예산을 180백만원으로 편 성함
43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454,411		276,602	2.4	(불용사유)식비 단가조정 및 실급식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1,081백만원) - 시설장 중도퇴사 등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00백만원) - 입소정원 대비 실 급식인원 감소 (305명)에 따른 급식비 집행 잔 액(100백만원) ※ 2018년 입소정원 1,265명 → 2018년 입소 현원 951명 (‘18년 평균 인원) - 기능보강 사업비 등 보조금 집 행 잔액 발생(76백만원) (향후대책)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입 퇴소자 정확한 파악을 통해 ‘19년도 에는 감액 예산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
44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235,425		219,150	5.2	(불용사유)급식비를 실입소자로 편성 하였으나, 입소자의 외출(외부근로 활 동, 휴일나들이 등), 입퇴소 등으로 급 식비 예산 및 종사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향후대책)급식비 예산 산출시 실입 소자를 대상으로 편성하되 입소자 의 전년도 변동사항을 분석하여 예산편 성
45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7,344,565		286,947	3.9	(불용사유) 종사자 입퇴소에 의한 인 건비 감소 (향후대책)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확충 검토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46	자활근로 사업 지원	51,494,967		1,714,056	3.3	(불용사유)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34,178백만원 중 33,43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742백만원 잔액발생하였음 (수령액 대비 97.8% 집행) (향후대책)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여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참여 의지를 높임
47	청년희망 키움통장	2,097,118		642,656	30.6	(불용사유)보건복지부의 가입조건 미 충족자 포함한 목표 가구수 설정으로 실제 가입대상자가 적어 불용발생 (향후대책)모집대상 요건 완화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
48	희망키움 통장II	8,111,708		1,055,359	13.0	(불용사유)3년간 본인 저축액(월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적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년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자가 감소 (향후대책)2019년 집행시 사업량에 예측하여 변경내시 요청 등 불용액 최소화 노력

- 이외에도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불용액: 37억 6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불용액: 3억원. 이월액 1억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불용액: 1억8천만원), 어르신생활시설운영(불용액: 26억 1천만원, 이월액 1억 4천만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불용액: 26억 5천만원, 이월액 31억 5천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불용액: 10억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불용액: 17억 1천만원) 등이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의 불용발생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대상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전례답습적인 예산 추계치를 활용함에 따라 실수요자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라고 하겠음.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심사시 그 원인(예산절감, 사업실패, 부적절한 예산운용 등)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하는 등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 불용액이 1억이상이면서 불용율이 40%이상 발생 사업

1) 의사상자 지원사업

- 의사상자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8년 당초예산액은 1억 5천 7백만원임.
- 의사상자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상자 인정 결과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당초예산 인원보다 실지급인원이 적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집행부는 불용사유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음에 기인하였다고 여겨지며, 불용율이

80.9%라는 높은 비율은 사업 계획 시 사업의 수혜대상자의 추계가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본사업이 예비비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예산의 편성은 예산의 사장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당시 부적절한 예산이나 사업 수혜대상 규모의 과액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다 산정이라는 당초 계획의 문제라고 보여지므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함.

〈표 2-17〉 의사상자 지원사업 예산 지출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제외)	불용률(%)
의사상자 지원	157,000		127,000	80.9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광역지원센터(1개소)와 및 자치구 단위의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지원센터는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과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총12개소 / 광역1개소, 기초11개소('17년 5개소, '18년 6개)
 - ※ 기초 센터는 예산확보·구청장 의지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적절히 안배
- 운영인력 : 광역 5명이상(무급센터장1, 직원4), 기초 3명이상(무급센터장1, 직원3)
 - ※ 인력은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등)을 보유한 자를 공개채용
- 사업방식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고일 현재 실 사업수행주체의 주사무소가 서울 소재(광역은 운영실적 2년 이상)

- 2018년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은 기존 센터 5개소와 2018년 신규 선정예정인 8개소(자치구 공모 지원) 지원예산으로 총1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10억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6천 7백만원으로 변경 사용된 1억 1천 7백만원을 포함하면 예산의 48.4%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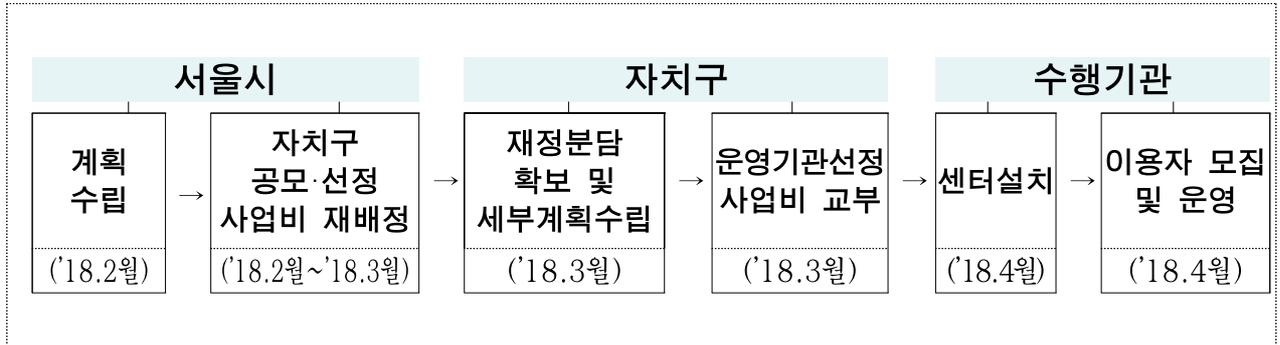
<표2-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차년세경 상보조금	1,000,000	-	△117,000	883,000	515,750	367,250 (41.6%)

- 이에 대해 집행부는 신규 선정 자치구가 6개소로 당초 계획 물량(8개소)을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 자치구의 경우 구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표2-19〉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진 절차



- 그런데 이와 관련한 집행부 수요조사 관련 공문 확인 결과, 자치구 수요조사는 2018년 예산 수립 이후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18년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 희망 자치구 수요조사」 장애인자립지원과-21684)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회계결산시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는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받은 바 있음.
- 앞으로 본예산 편성시 사전수요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기금 운영 관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2018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3,267억 7천 9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233억 3천 5백만원)보다 34억 4천 3백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2개 기금(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4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구호계정)이 운용되었음.

〈표 3-1〉 복지본부 기금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회 계 연 도 말 현 재 액	326,779	323,335	326,453

- 융자금(이자 포함) 수입은 직접회계연도보다 13억 7천 2백만원 증가하고 이자수입도 24억 3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의 기금 운영지출규모는 83억 4천 5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억 8천 8백만원 감소한 바, 고유목적사업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6억원 증가한 83억 4천 4백만원임.(다음 표 참조)

〈표 3-2〉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8	2017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	-	-	
	예치금잔액	997	503	494	
	예탁금잔액	13,000	14,000	△1,000	예탁금 원금회수
운용수입	합계	2,292	1,766	526	
당해연도 조성 ㉡	소 계	295	263	32	
	전입금	-	-	-	
	보조금	-	-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수금	-	-	-	
	이자수입	233	165	68	금리 인상
	기타수입	62	98	△36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감소
	예탁금원금회수	1,000	1,000	-	
예치금회수	997	503	494		
운용지출	합계	2,292	1,766	526	
당해연도 사용 ㉢	소 계	856	769	87	
	비용자성사업비(고 유목적)	755	768	△13	
	용자성사업비	100	-	100	용자사업 신설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
	기본경비	1	1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예탁금	-	-	-		
예치금	1,436	997	439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른 예치금 증가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13,436	13,997	△561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436	997	439	
	예탁금	12,000	13,000	△1,000	예탁금 원금회수

〈표 3-3〉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8	2017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24,588	24,961	△373	장애인단체 지원, 저소득 장애인 전세 자금 지원
	예치금잔액	10,188	10,561	△373	
	예탁금잔액	14,400	14,400	-	
운용수입	합계	13,476	12,886	590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회수
당해연도 조성 ②	소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862	1,837	1,025	
	예수금				
	이자수입	426	488	△62	
	기타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188	10,561	△373		
운용지출	합계	13,476	12,886	590	전세보증금 지원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치금 증가
당해연도 사용 ③	소 계	2,194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673	691	△18	
	융자성사업비	1,500	1,993	△493	
	기본경비	21	14	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예탁금				
예치금	11,282	10,188	1,094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25,682	24,588	1,094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1,282	10,188	1,094	
	예탁금	14,400	14,400	-	

〈표 3-4〉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8	2017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7,902	7,524	378	
	예치금잔액	3,482	3,104	378	융자금 원금회수 증가
	예탁금잔액	4,420	4,420	-	
운용수입	합계	4,474	7,664	△3,190	
당해연도 조성 ②	소 계	4,474	7,664	△3,190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224	877	347	융자금 원금회수 증가
	예수금				
	이자수입	136	137	△1	
	기타수입	9	-	9	
	예탁금 원금회수		4,000	△4,000	예탁금 회수
예치금회수	3,105	2,650	455		
운용지출	합계	4,474	7,664	△3,501	
당해연도 사용 ③	소 계	993	4,560	△3,190	
	비용자성사업비(고 유목적)	847	437	410	
	융자성사업비	145	4,122	△3,977	융자금 신청 감소
	기본경비	1	1	-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예탁금					
예치금	3,481	3,104	377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7,902	7,524	37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3,482	3,104	378	융자금 원금회수 증가
	예탁금	4,420	4,420	-	

〈표 3-5〉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8	2017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277,226	275,920	1,306	
	예치금잔액	177,226	16,180	161,046	
	예탁금잔액	100,000	259,740	△159,740	
운용수입	합계	217,390	179,428	37,962	
당해연도 조성 ㉡	소 계	6,834	3,508	3,326	
	전입금	0	0	0	
	보조금	742	0	742	재난관리기금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5,938	3,508	2,430	
	기타수입	154	0	154	보조금집행잔액반납액
	예탁금원금회수	33,330	159,740	△126,410	'14년 감사원지적사항 (재정투융자기금 관리 -별도 계좌 개설 관리) 에 따라 예탁금 상환 중 (연도별 금액상이)
예치금회수	177,226	16,180	161,046		
운용지출	합계	217,390	179,428	37,962	
당해연도 사용 ㉢	소 계	4,301	2,202	2,099	
	비용자성사업비(고 유목적)	4,301	2,202	2,099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이재민호급 등 증가
	융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13,089	177,226	35,863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279,759	277,226	2,533	예탁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213,089	177,226	35,863	
	예탁금	66,670	100,000	△33,330	

- 2018회계연도의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은 22개 사업, 당초 지출계획현액 100억 2천 7백만원 중 17.0%인 83억 2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17억 7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7.0%)이 미집행되었음.

〈표 3-6〉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 계	22	10,027	8,322	0	1,707	17.0%	
사회복지기 금	노인복지계 정	11	895	856	0	40	4.4%
	장애인복지계 정	2	3,000	2,173	0	827	27.6%
	자활계 정	6	1,177	992	0	186	15.8%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 정	3	4,955	4,301	0	654	13.2%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8회계연도 기금용자사업은 3개 사업, 당초 지출계획현액 27억원의 35.4%인 9억 5천 5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2017회계연도(불용률 22.0%)와 비교하여 지출계획 후 집행되지 못한 불용규모가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금의 성격상 불용액이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재활용되는 특징이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불용예상액을 예치금이나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수익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7〉 기금별 융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	2,700	1,745	0	955	35.4%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	100	100	0	0	0.0%
	장애인복지계정	1	2,300	1,500	0	800	34.8%
	자활계정	1	300	145	0	155	51.7%

-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지출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재원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과도하게 증액하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익률을 보면 장애인복지계정을 제외한 노인복지계정과 자활계정 및 구호계정은 연 1%대의 수익률을 얻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에 예치하거나 이율이 분기별로 변동되는 정기예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 하락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을 제외한 기금이 1%대의 기금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기금별 여유자금과 연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용예상액 등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불예금 등에 예치하여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